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적 작성·제출 대상에 지방의회의원 추가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적 작성·제출 대상 선거 추가 등(안 제65조제4항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	3
2. 후보자별로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선거별로 통합(안 제65조제11항)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09.
3. 회 부 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적 작성·제출 대상 선거 추가 등(안 제65조제4항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공직선거의 종류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 ----- ----- <u>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u> ----- ----- ----- ----- ----- -----.

⑤ ~ ⑩ (생 략)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⑫ ~ ⑭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 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같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합한 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선거공보의-----

3. ~ 7. (생략) ④ · ⑤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이 과거에 비해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선거의 투표율 역시 상승하고 있음.

《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

(단위: %)

구분	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2010년 (제5회)	2014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22년 (제8회)
투표율	48.9	51.6	54.5	56.8	60.2	50.9

자료: 통계청, 지표누리(2025.6.5. 검색)

1)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그러나,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총 6,544명 중 5,008명(76.5%)²⁾으로 시각장애선거인 다수가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력 등의 선거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의무적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정치자금 수입도 적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선거인들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정책이나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실현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평등한 선거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22.12)

3) 조선비즈, “모로는데 어떻게 뽑아요?...지방선거 후보자 3명 중 2명은 점자형 공보물 내지도 않아, 2022.5.2.6.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 대상자⁴⁾는 총 6,544명에 이르나, 현재 점자 출판시설수는 전국적으로 36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20개소)에 편중되어 있는 점⁵⁾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소요 및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2026년 39억 6,200만원, 2030년 42억 8,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2억 5,000만원(연평균 16억 5,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총 5,988명이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556명으로 총 6,544명임.

5) 서울에 12개소, 인천에 2개소, 경기도에 6개소, 그 밖의 지역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세종시에는 없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123	-	-	-	4,288	8,250	1,650

주: 본 추계에서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수가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제8회, 2022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 인쇄량 증가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의 한계, 예산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한 각각의 저장매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별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 9 –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u>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u>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 -----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같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합한 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⑫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u>선거공보</u>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략) ④ · ⑤ (생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선거공보</u> 의----- ----- -----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⁶⁾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이하 “디지털파일”이라 함)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파일”의 형식이 상이⁷⁾하고, 특히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별로 각각 저장한 여러 개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여러 개의 저장매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정보 접근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로 제출된 “디지털파일”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통합 저장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별로 제출된 디지털 파일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통합하여 발송하는 방식은 행정업무

6)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⑪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7) 음성 또는 점자 등

가 집중되는 시기⁸⁾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력 증원 및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디지털파일을”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제작하는 것은 선거행정 절차가 사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6

8)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제출,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발송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 선거일 전 후 10일까지 발송